

고 시

선	기관 의 장
람	

구 보

- 고 시
제2024-8호 :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2
- 공 고
제2024-103호 : 남대문구역 제7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3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※ 구보 게재일자자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8호

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31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지적도근점 번호	세계측지계		소재지	표지의 재질
	X(m)	Y(m)		
10994	551292.04	199823.44	중구 필동3가 17-7	황동
10995	551273.03	199892.97	중구 필동3가 19-19	황동
10996	551318.31	199908.20	중구 목정동 1-19	황동
10997	황551378.00	199943.58	중구 목정동 1-26	황동
10998	551397.60	199942.50	중구 목정동 32-8	황동
10999	551421.17	200010.29	중구 목정동 26-10	황동
11000	551390.44	200000.72	중구 목정동 1-2	황동
11001	551361.06	199996.16	중구 목정동 26-10	황동
11002	551303.43	199949.14	중구 목정동 1-23	황동
기준원점명		중부원점		
설치일		2024. 1. 16.		
측량성과 보관장소		서울특별시 중구청 부동산정보과		
비고		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)		

※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(02-3396-5935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103호

남대문구역 제7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
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09.21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70호(2021.10.14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53호(2022.06.23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남대문구역 제7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,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,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3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사업개요

-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남대문구역 제7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9-1번지 일대 / 2,194.6㎡
- 다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남대문철일피에프브이 주식회사 (대표자 최충호)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(남창동)
- 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(변경)일로부터 48개월

2. 공람개요

- 가. 공고기간 : 2024.01.31. ~ 2024.02.14.(14일간)
- 나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73)
- 다. 주요 변경내용 : 사업시행자 변경
 - 기존 : 남대문철일피에프브이 주식회사 (대표자 최충호)
 - 변경 :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(대표자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)
- 라. 공고방법 : 구보게재
- 마. 관계서류 : 공람장소에 비치
 -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